

XR 디바이스개발지원센터 전시부스 제작 및 설치 용역

# 과업지시서

2020. 12.

# I. 일반사항

## 1. 과업의 개요

### 가. 과업의 명칭

이 과업의 명칭은 ‘X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전시부스 제작 및 설치 용역’ 이라 한다.

### 나. 과업 개요

- 1) 사업명 : X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전시부스 제작 및 설치 용역
- 2) 장 소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3D디스플레이부품소재 실용화지원센터 4층
- 3) 기 간 : 계약일로부터 7일
- 4) 크 기 : 1,000mmx2,200mmx2,400mm

### 다. 계약 기간

이 용역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용역완료일까지로 한다.

### 라. 용역의 목적

X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의 통하여 개발된 시제품 및 완제품의 전시 및 홍보를 통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 마. 주요 내역

- 1) 용역 내역 : 구조물 제작 및 설치
- 2)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7일
- 3) 설치기간 : 7일
- 4) 설치규모 : X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전시부스(1,000mmx2,200mmx2,400mm)
- 5) 설치장소 : 3D디스플레이부품소재 실용화지원센터 4층
- 6) 예 산 액 : 19,481,000 금일천구백사십팔만천원정 (부가세 포함)
- 7) 구조물 설치 유의점

구 분	설치 내용 및 설명
구조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중 일체의 뒤틀림이나 변형이 없는 목공벽체 설치</li> <li>○ 벽면에 전시대 박스를 설치하였을 때 안정적으로 고정되고 추후 벽면의 뒤틀림이나 휘어짐 없게 설치</li> <li>○ 정확한 도면 해석에 따른 제작으로 전시품 설치이후 오차 범위 ±5센티미터 이하로 시공</li> </ul>
필름 및 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중 일체의 들뜸이나 변형이 없는 필름지 또는 실사 출력물 부착</li> <li>○ 해당면마다 제조일자가 동일한 필름지 시공</li> <li>○ 출력물은 발색이 우수한 안료를 사용하여 원본 데이터의 품질을 충족하여 시공</li> </ul>

## 2. 과업의 일반지침

### 가. 설계의 해석

구조물 설치는 도면과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에 의하여 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되 불분명한 개소가 있을 시는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고 협의하여 설치한다.

### 나. 제작.설치

구조물 설치는 현장조립에 앞서 반제품 상태로 제작 운반하여 현장 조립하여야 한다.

### 다. 재료 및 색조

업무담당자가 지시하는 재료, 색조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완성 후 업무담당자에게 납품, 시공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라. 설계 변경

본 전시 구조물 설치와 관련, 필요에 따라 재료의 치수, 위치, 공법 등 경미한 변경으로 인한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증감하지 않으며, 내역에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거나 없더라도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부분은 용역금액의 증감 없이 시공해야 한다.

## 마. 일반 재료

본 전시 구조물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품과 안전필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바. 견본품

제작 전 모든 칼라, 도안, 문안 원고 등은 사전에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 사. 수속

- 1) 본 전시관 설치에 필요한 수속은 감독자의 책임 하에 완료하도록 한다.
- 2) 설치 시 필요한 수속 절차 및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아. 비밀 유지

본 용역과 관련된 데이터의 소유는 발주처에 귀속되며, 계약 상대자는 관련 데이터를 허락을 득하지 않은 상태로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며, 과업 진행시 알게 되는 사항에 대하여 비밀 유지 위반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이익은 부담하여야 한다.

## 자. 안전상의 문제

업무 수행 중이나 행사 중 시설에 의해 발생하는 안전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차. 문제 및 하자의 발생

-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

- 며,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 2)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착오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보완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3) 본 전시장을 위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제작하는 과정에서 행사장의 기존 시설물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훼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카. 과업변경 조건**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 일수를 곱한 금액(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